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1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2

I. 개요

1.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3. 4.

(3) 회 부 일 : 2025.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II. 검토 의견

1.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 개정안은 도서·벽지¹⁾ 지역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① (생 략)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③ (생 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다만, 도서·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도서·벽지의 정의에 관하여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²⁾,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규정³⁾하고 있는데,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그 재원을 100%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서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⁴⁾ 대상이므로,

2) p.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참조

3)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극복 지원은 임의 규정이지만, 난임극복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각 호로 열거하여 의무 규정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28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이에 부대적인 성격으로 보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⁵⁾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또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비용 부담이 큰 시술비 등 의료비 경감에 있는 만큼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급성·반복성 등 측면에서 중증·희귀 질환 등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종합적 비교 검토도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98

5) 참고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난임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란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교통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시술비 1회에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1회 정액 3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4조(지원대상)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과 임신부로서,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기준)

-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2. 임신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1회 진료 시마다 1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일부 등을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 (사업경과 및 현황) '06. 시작, '22.~ 지방이양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소득 무관)
- (지원내용)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 보편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
 - (범위) 신선배아·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3종
 - (금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합계액의 90% 및 일부 비급여* 약제
- * 비급여 약제 최대 지원 금액은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 원이며, 전체 최대 지원금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실적) 지방비 100% 예산, ('23) 200,288건 지원

<최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❶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24.11.~)
- ❷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기존50%→개선30%, '24. 11~)

구 분 (예시: 건보급여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건보 부담률 7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 수정	신선배아 (300만원)	20회	21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120만원)		84만원	50만원
인공수정 (60만원)		5회	42만원	3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건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지원